

2025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전형요항(최종)

1. 모집 정원 (남녀 4학급, 100명)

모집 단위		모집 인원	비고
정원 내	일반전형	80명	- 남·녀 성별 중 어느 한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음
	사회통합전형	20명	
정원 외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3명)	정원의 3% 이내
	특례입학 대상자	(2명)	정원의 2% 이내
계(정원 외)		100(5)명	

* 전국단위 모집임.

2. 지원 자격 및 모집 인원

가. 공통사항

- (1)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2)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 ※ 외국 소재 학교 출신 지원자의 경우 2024년 9월 1일 기준 외국 초등학교 졸업자(우리나라 학제상의 초등학교 교육 연한인 12학기 기준(한 학기 6개월 기준))이거나 또는 국내외 초등학교 수학 연한이 6년 이상인 자여야 함.

나. 전형별 지원 자격 및 모집 인원

전형 구분 및 모집 인원		지원 자격
일반전형(80)		■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사회통합전형(20)		■ 사회통합전형 범위에 속하는 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정원 외	국가유공자 자녀(3)	■ 국가유공자 자녀 중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자
	특례입학 대상자(2)	■ 경기도교육청 특례입학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대상자(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등)

※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 가능함.

※ 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함.

※ 특례입학대상자의 재학기간 산정은 초등학교 4~6학년만 인정함.

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순위	범위
기회균등 대상자 (12명)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p>사람 또는 그 자녀</p> <p>※ 교육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p> <p>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p> <p>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p> <p>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p> <p>※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p> <p>⑥ 학교장 추천 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p>[선정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p>[객관적 증빙서류 예시]</p> <p>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 증명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함. <p>(부적정 예시: 폐업확인서만으로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 → 객관적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p>
<p>사회다양성 대상자 A (4명)</p>	<p>①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p> <p>② 조손가정 학생</p> <p>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p> <p>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p> <p>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p> <p>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p>
<p>사회다양성 대상자 B (4명)</p>	<p>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p> <p>② 준사관/부사관 자녀</p> <p>③ 산업재해근로자 자녀</p> <p>④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초등학교의 6개 학년의 전 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p> <p>⑤ 도서벽지 초등학교 졸업예정자(2024년 2월 29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p> <p>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p> <p>⑦ 지역사회 배려자 : 2022년 3월 1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부터 부모와 함께 가평군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p> <p>⑧ 외국인(부모 또는 부모 중 어느 한 쪽과 지원자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p> <p>※ 단,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p>

- | | |
|--|------------------------------------|
| | 경우와 지원자가 이중국적인 경우는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
- ※ 사회통합전형의 지원 자격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중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로 함.
 - ※ 사회다양성 대상자 A, B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은 건강보험료 최근 10개월(2023년 11월~2024년 8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함(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
 - ※ 사회통합전형 학생 추천 및 선발 절차와 건강보험료 적용기준은 별첨자료를 참고함.
 별첨1: 2025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전형 학생 추천 및 선발 절차
 별첨2: 사회다양성 대상자 A, B 지원 자격 적용 기준(소득분위 8분위 이하)

3. 전형방법

가. 1단계 전형 (전산 추첨)

- (1)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
- (2)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추첨 장소는 추후 공지)
- (3)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사회통합전형 대상자는 각 영역별 지원자 중 선발 인원수의 2배수 선발)

나. 2단계 전형(면접)

자기주도학습 영역	인성 영역	총 합
25	15	40

- (1) 학교생활기록부 II,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면접
- (2)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1,5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 ① 자기주도학습 영역(자기주도 학습태도와 꿈과 끼 영역)
 - . 자기주도학습 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본교 특성과 연계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과 중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 ② 인성 영역
 - . 활동실적: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초등학교 활동 실적
 - . 배우고 느낀 점: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의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 .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3)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자기소개서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한글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함.
 - ② 자기소개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입증 서류는 필요한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함.
 - ③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부과함.
 - ④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청심국제중고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모든 활동(영어캠프 포함)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초등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 ⑤ 자기소개서에 배제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함.
- ㉠ 자기소개서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각종 자격증 취득사항,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기재 시 영점 처리함.
-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해당 평가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함.
- ㉢ 인증시험 및 각종 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항목 영점 처리함.
- ⑥ 영점 혹은 감점 처리되는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 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초4 겨울방학 중 ○○○에서 주최하는 ○○○○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초등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 기타 배제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 일체

다.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방법

- (1) 국가유공자 자녀는 기회균등대상자에 포함하여 공동 선발하되, 탈락한 국가유공자(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해 모집정원의 3%(3명)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 선발함.
- ① 1단계 추첨 선발에서 탈락된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의 3%(3명)의 2배수를 넘는 경우, 재추첨을 통해 정원외 모집인원의 2배수(6명)를 정원외 국가유공자 전형 1단계 합격자로 추가 선발함.
- ② 1단계 추첨 선발에서 탈락된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의 3%(3명)의 2배수를 넘지 않는 경우, 탈락된 국가유공자 자녀는 지원자는 모두 정원외 국가유공자 전형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함.
- ③ 2단계 전형에서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기회균등대상자와 함께 경쟁하여 탈락한 경우 1단계 추첨에서 선발된 정원외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와 함께 모집정원의 3%(3명) 범위에서 정원외로 최종 선발함.
- ※ 정원외 3%(3명) 선발은 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 (2) 일반전형 합격자 중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총 정원의 3%(3명)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전형 지원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

4. 사정기준

가. 40점 만점의 총점순으로 선발한다.

나. 사회통합전형 방법

- (1) 각 영역별로 정해진 모집인원을 선발한다.
 - (2) 각 영역별 지원자가 선발 인원 미달했을 경우 지원 미달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일반전형으로 충원하며, 나머지 미달된 인원은 각 영역별 인원을 통합하여 석차 순으로 선발한다.
 - (3) 같은 영역 내의 대상자 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 ※ 단, 사회다양성 대상자 A, B의 경우 전·편입학을 통한 학생 선발시 통합 선발 할 수 있으나, 각 영역 해당 지원자를 우선 선발함

다. 모든 전형 공통으로 동점자의 사정기준

- (1) 자기주도학습 영역 점수 우수자
 - (2) 인성 영역 점수 우수자
- ※ 위 우선순위 단계까지 적용해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라. 합격자 배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미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이라도 언제든지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본교에 재학할 수 없다.

- (1) 지원자격이 사실과 다른 자
- (2)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자
- (3) 감염병, 정신 질환 등으로 단체 생활 및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본교는 입학 후 재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판단기준은 학교 측 전문가 소견에 따름.)
- (4) 제출한 자기소개서가 대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자
- (5) 입학허가예정자로 입학허가예정서 등을 교부받고 입학 수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거나 입학을 포기한 자
- (6) 타 국제중학교에 복수 지원한 자(이중 지원이 확인될 경우 양쪽 모두 불합격 처리)

5. 제출 서류

가. 1단계 전형 제출 서류

- (1) 지원자 공통서류(온라인 작성 및 업로드)
 - ① 입학원서 1부
 -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③ 초등학교 재학(졸업) 사실 및 지원 자격 확인서 1부(본교 소정양식)
 - ④ 사진 파일
- (2) 일반전형 추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외국소재 학교 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학교 재학 전 기간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각 1부 .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서' 1부.) ※ 단,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교육부 홈페이지: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시, 증빙자료(외국학력인정학교 목록 파일 상 시트명과 학교번호 포함) 1부와 학적서류 진위 확인서(본교 소정양식) 1부를 제출해야 함. .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모든 일반전형 지원자는 인터넷 원서접수를 한 후 온라인상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 온라인상으로 제출할 시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등은 스캔이나 사진촬영을 한 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부모 및 학교장 확인서 (본교 소정양식) 1부 	
기 회 균 등 대 상 자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기타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법정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계층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1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교육비지원대상자	· 교육비지원확인서 1부
학교장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교감 원본대조필) - 학교장추천위원회는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지역 위원 등 7~9명으로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지역 위원 반드시 포함) · 객관적 증빙서류 각 1부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본교의 별도 소정양식에 동 사실 명기 - 필요 시 재산세 납부 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사회 다양성 대상자 A, B 공통	지역건강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1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소년소녀가장		· 공통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조손가정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해당 행정구청장 발급) 1부 ·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 1부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순직확인서(관련사실 확인서) 1부

다문화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취득증명서(국적 취득시) 또는 여권사본(국적 미취득시)1부 · 외국인 등록 증명서(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1부 · 혼인 관계 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친부 또는 친모 중 결혼 전 외국 국적자) 1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증빙서류 1부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아동복지시설장 날인) 1부)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재학 초등학교의 최초 전입일 또는 입학일자가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1부 · 초등학교 소재 상세주소(면단위) 및 입학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기간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전 가족 등재, 부모 기준) 1부
준사관/부사관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총 재직기간 명시) 1부
도서벽지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재학 초등학교 최초 전입일 또는 입학일자가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II 1부 · 재학증명서 1부(졸업자는 해당 없음) · 도서벽지 학교임을 증명하는 초등학교 학교장 확인서 1부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결정통지서 혹은 보험급여지급확인서 1부
한부모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지역사회 배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이전 주소 모두 기재되어야 함) 1부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모와 본인 모두 해당)

- ※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 영어를 제외한 각종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해야 함.
-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및 제출절차에 대한 상세사항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므로 전형 일정 이전에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함.

(4) 특례입학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특례입학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입학 신청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 외국학교 재학 전 기간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각 1부 ·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서’ 1부.)

	<p>※ 단,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교육부 홈페이지: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시, 증빙자료(외국학력인정학교 목록 파일 상 시트명과 학교번호 포함) 1부와 학적서류 진위 확인서(본교 소정양식) 1부를 제출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1부 (최종 재학 연월일과 최종 재학학년 명시) · 해외 체류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1부 · 주민등록초본(학생) 1부
--	---

- ※ 국내 발급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 영어를 제외한 각종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해야 함.
 - ※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가 국내의 초등학교에 재취학하여 외국 거주 기간 또는 재학 기간이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방학기간에 출국·귀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서 각각 2개월 이내의 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서 특례입학자격 심사를 받아 그 인정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본교에 제출해서 심사 받음.
- ※ 해외 체류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 의료보험증 · 운전면허증 · 체류허가증 · 거류증 · 영주권 등
- ※ 제출서류(해외 발급)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사본일 경우 소속 초등학교로부터 원본대조필 받은 후 본교에 제출)

나. 2단계 전형 대상자 제출 서류

- (1)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2부 (원본 1부 + 개인정보를 도말한 사본 1부)
 - 출력 시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제외
 - 학교(학교장) 원본대조필
- (2) 자기소개서 1부
 - 지원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작성 후 출력하여 서명한 후 제출
- (3)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1부
- (4) 수험표
 - 입학지원서와 동일한 사진 1매 부착 후 소속 초등학교장 직인 혹은 압인 사용
 - 수험표는 서류 제출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2단계 면접 전형일에 지참해야 함.

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1) 사회통합전형 및 특례입학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이전 별도로 공지된 사전검토 기간 내에 본교를 방문하여 제출 서류를 검토 받고 지원 자격에 해당함을 확인받은 후 해당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전형으로 응시해야 한다.
- (2)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제출한다.
- (3) 검정고시 합격자 및 국내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이 없는 지원자는 해당 기간 동안 교내·외 활동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4) 온라인상으로 제출하지 않는 모든 서류는 원본을 내거나 학교(학교장)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제출한다(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내용과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5) 학력인정 학교 등의 지원자는 학력인정 학교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교육청 인가일 명시된 서류).

6. 전형일정

구분	일자	비고
사회통합전형 및 특례입학 대상자, 지원자격 사전검토	2024.10.07.(월) ~ 2024.10.1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학년도 지원예정자 중 사회통합전형 및 특례입학 대상자는 본교를 방문하여 자격 증빙 서류를 사전에 검토 받은 후 지원자격이 있음을 확인받은 후에 해당 전형에 지원 가능함. 만일 지원자격 사전검토를 받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기간 중 해당 전형에 지원 불가함. 자세한 일정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
사회통합전형 추가/보완 서류 제출	2024.10.14.(월) 10:00 ~ 2024.10.16.(수) 17:00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검토 기간에 지원자격을 검토받은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중 본교의 요청에 따라 추가/보완 서류가 필요한 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가능 (별도 문의)
1단계 인터넷 원서접수	2024.10.17.(목) 10:00 ~ 2024.10.21.(월) 17:00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서접수 모든전형(일반, 사회통합, 특례 지원자 전체) 해당
1단계 추첨 실시	2024.10.24.(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 추첨 방식 장소 추후 공지
1단계 합격자 발표	2024.10.24.(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
2단계 서류 입력	2024.10.25.(금) ~ 2024.10.28.(월) 17:00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전형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2단계 해당 서류를 입력 후 출력함.
2단계 서류 방문 제출	2024.10.29.(화) ~ 2024.10.30.(수) 17:00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2단계 제출서류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09:00~17:00). 우편접수는 불가함.
2단계 전형(면접)	2024.11.09.(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 본교에서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	2024.11.12.(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
합격자 소집일	추후 공지	

※ 2단계 전형(면접)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이타적인 품성과 창의적인 지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본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은 토론과 발표, 영어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수준 높은 수업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본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므로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단체생활 및 규율 준수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입학 전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다. 미등록 또는 등록 후 입학 포기자로 인한 결원은 전형별 입학전형 최종 총점의 차순위자로 2월 말일까지 충원한다. (합격포기자(미등록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서를 받아 처리함.)
- 라. 본교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대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며, 검색 결과 표절이 확인될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마. 현재 국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바. 접수일시나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타 국제중과 복수지원은 불가하다(이중 지원이 확인될 경우 양쪽 모두 불합격 처리).
- 사. 본 전형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아. 제출서류 일체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자. 전형결과 및 전형 관련 일체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 차. 전형료
 - 1단계 : 10,000원 (인터넷 대행업체 수수료 별도)
 - 2단계 : 20,000원 (인터넷 대행업체 수수료 별도)

학교주소 : (우편번호 1246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213 청심국제중학교

- 문의처 : 대표전화 031) 589-8900 입학홍보부 031) 589-8888, 8881, 8882
- 팩스번호 : 031) 589-8999
- 홈페이지 : www.csia.hs.kr

청심국제중학교장

별첨 1

2025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전형 학생 추천 및 선발절차

- ◆ 초등학교는 학생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등을 학교(업무 담당자)에서 검토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중학교에 제출(추천)
(학교장 추천 학생만 학교장추천위원회 심의 후 검증 추천)

■ (초등학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추천

□ 일반 학생

- 대상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전체(학교장 추천 학생 제외)
- ①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원신청서 제출 → ② 학교(업무 담당자)에서 학생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③ 지원하는 중학교에 제출
 - 학생 및 학부모는 지원 유형, 제출서류 기입 및 지원 자격, 증빙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제출

□ 학교장 추천 학생

- 대상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중 1순위 기회균등대상자 학교장 추천 학생만 해당
- ①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원신청서 제출 → ②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학생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③ 지원하는 중학교에 추천(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증빙서류 첨부)
 - 학생 및 학부모는 지원 유형, 제출서류 기입 및 지원 자격, 증빙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제출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증빙서류가 없으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특별히 판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해당 중학교에 제출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 (구성)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지역 위원 등 7~9명으로 구성
 -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지역 위원 반드시 포함
 - * 학교 규모가 학년당 20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5명으로 구성 가능
- (주요 심의 사항) 지원한 학생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 학생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내용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견서 제출 등
 - * 심의 과정에서 성적 등 심사는 불가능하며, 학생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의는 자제
 - * 심의 시 적격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별첨 2

사회다양성 대상자 A, B 지원 자격 적용 기준(소득분위 8분위 이하)

■ 사회다양성 대상자 A, B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근거 :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소득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하 확인서) 상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확인)

■ 2024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 유의 사항

- 휴직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후 보험료 납입기준을 적용하되 최근 납부 기준으로 함.

- 적용기간 중 보험료 정산 후 환급을 받거나 더 많이 낸 경우
 - 보험료 정산 금액까지 포함해서 평균액을 적용